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9일, 김선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의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지역주민에 대한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련 지원사항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지원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다른 지역의 주민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련 지원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법령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처리법」 제2조의 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점차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성숙함에 따라 죽은 반려동물을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봉안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을 규정하여 허가제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77개소의 동물장묘업체가 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는데, 특히 서울·대전·제주의 경우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 동물장묘업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 제71조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전북 임실군의 ‘오수 펫 추모공원’ 1개소 뿐이고, 조성 중에 있는 공설동물장묘시설도 경기 여주시의 ‘반려마루 1개소 뿐임.

이에 대하여, 사람의 화장장·납골당 등과 마찬가지로, 동물장묘시설 역시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바, 시설의 설치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조성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위탁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는 사용료·관리비 부과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입법의 의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사람의 장사(葬事)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과 개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장사법」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장사법」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사법」에 비하여 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다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개정안의 수용과 관련하여는 현재 전국에 단 1개소만이 설치·조성되어 운영 중인 공설동물장묘시설이 각지에 원활하게 설치·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장사법」에 비하여 강한 지역 주민 지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71조제5항에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71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때 사용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제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장묘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바,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 위탁 및 사용료 감면 등은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 주체를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고, 공동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지역주민과 다른 지역주민 간에 달리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경미한 자구정리가 있었음.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운영 주체의 범위와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운영 주체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1조제4항 중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를 “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u>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u>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u>
<u><신설></u>	⑤ <u>제3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u>	⑤ ----- ----- ----- ---- <u>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u>

	<u>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u>	<u>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조례로 정한다.</u>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 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u><후단 신설></u>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이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u> <u>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u> <u>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u> <u>관리비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u> <u>있다.</u>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동물 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 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